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10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81,221,510원, 농어촌특별세 4,061,070원, 지방교육세 8,122,14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가. B은 2007. 9. 3.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 6. 30. 폐업하였다. B은 또한 2009. 7. 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가 2010. 12. 23. 청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3.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8. 3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고, 2012. 9.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유형: 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B은 2010. 11. 1.부터 2015. 4. 2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0. 1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9. 25. [redacted]구 E 대 25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기존 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1,221,510원, 농어촌특별세 4,061,070원, 지방교육세 8,122,140원(각 가산세 포함) 등 합계 93,404,7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5. 3. 조세심판원에 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력파견사업 및 국내·외 스포츠기록 등을 수집·가공하는 빅데이터 사업, 행사 및 프로모션 대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영위한 C 및 D와 그 업종을 달리하고, 그 매출형태와 매출규모, 임직원 수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 및 D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와 C, D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C	D	원고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법인
대표자 (대표이사)	B	B	2010.8.23.~2010.11.1.: F 2010.11.1.~2015.4.23.: B 2015.4.23.~2017.7.10.: G
소재지	[redacted]시 H	[redacted]구 I	설립 시: [redacted]구 J 2010.11.: [redacted]구 K 2013.4.: [redacted]구 L 2014.11.: [redacted]구 E
업태	서비스	서비스, 제조업	서비스, 제조업, 소매, 부동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상호	C	D	원고
종목	온라인정보제공	온라인정보제공, 인쇄, 디자인	온라인정보 및 사진서비스, 스포츠고글, 전자상거래, 상가임대, 디자인, 광고대행
개업일	2007. 9. 3.	2009. 7. 21.	2010. 8. 23.
폐업일	2010. 6. 30.	2010. 12. 21.	-

2) 원고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설립 당시부터 2010. 10. 13.까지는 주식회사 M(70%, 이하 'M'라 한다)와 F(30%, M의 대표이사이다)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2011. 1. 1.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는 B(70%), N(20%, M의 대표이사이다), M(10%)가 원고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의 설립 당시 실제 주식보유자는 주주명부와 달리 B의 처인 O(75%)와 M(25%, 2개월 후인 2010. 11. 1.에 10%로 조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3) C은 그 사업기간 동안 P 유한회사, 주식회사 [redacted]컨설팅, Q회사, 주식회사 [redacted]컴퍼니, 주식회사 [redacted]코리아, 주식회사 [redacted]오픈, 주식회사 [redacted]잡[1], [redacted]원 등과 거래를 하였고, D는 그 사업기간 동안 P, [redacted]컨설팅, Q회사, [redacted]컴퍼니, [redacted]공사 등과 거래를 하였다. 한편 원고의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기간 동안 C 및 D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곳은 P, [redacted]컴퍼니, [redacted]공사인데, 그 중 P(P는 2012년 10월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웹사이트를 폐쇄하였다)가 위 각 사업자들의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 원)

	C	D	원고

1) 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C	D	원고
2008년(총 매출액)	63.1%(220,423)		
2009년(총 매출액)	64.5%(181,442)	69.8%(169,032)	
2010년(총 매출액)			91.8%(273,556)
2011년(총 매출액)			75.4%(2,746,086)
2012년(총 매출액)			33.4%(3,794,944)

4) C 또는 D는 위와 같이 주로 P가 의뢰하는 특정 섹션의 사이트('R', 'S', 'T', 'U', 'V' 등)를 기획·제작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밖에 의뢰 사이트 구축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경품을 제작·배포하는 업무('W', 'X' 등)등도 수행하였다.

원고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P와 수차례 서비스계약(계약서상 공급자 측 담당자로 B이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고 P 사이트의 특정 섹션{Y, Z, AA, AB, AC, AD 등}을 제작·운영하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redacted]미디어에 'AE'의 온라인 메인 사이트 구축 및 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redacted]스포츠에 'AF' 행사의 구성, 연출, 운영, 인력, 예산계획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 시행하는 행사용역 대행업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redacted]콜라, [redacted]캡스 등과 프로모션,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5)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C과 D의 업무실적이 원고의 것으로 게시되어 있고, 원고는 C과 D의 인력을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설립은 신설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C과 D가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는 C과 D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B이다.

② 원고가 C과 D의 인력을 채용하고 그 업무실적을 원고의 것으로 취급한 것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위 업체들이 수행한 사업과 연속되거나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유력한 징표이다.

③ C, D 및 원고의 사업형태 모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 섹션 또는 주제에 관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을 주된 의무로 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는 모두 온라인정보 제공업이자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으로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2011년까지 원고의 주된 거래처는 P로, C 또는 D의 주된 거래처와 같다. C과 D는 모두 원고의 설립 전후 가까운 시점에 폐업하였다.

⑤ 2011년부터 원고의 매출액 규모가 C 또는 D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졌고, 2012년부터 원고의 거래처가 다양해지고 온라인정보제공 내지 프로그램 서비스업 외에 행사대행업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원고가 2011년에 P와 사이에 P의 주요 모듈(랭킹, 투데이, 라이프, 네티즌 핫 이슈, 서치 등) 운영과 초기 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용역범위가 광범위한 내용으로 계약금액 12억 원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원고의 주된 거래처이던 P가 2012년 말경 한국에서의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함에 따라 기존의 온라인정보 제공 내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보다 계약금액이 큰 행사 대행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호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설립 이후의 사업 운영 현황을 참작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설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위 조항의 법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예시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이 확장되거나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나 매출비중을 기준으로 정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년 매출액 규모가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012년 행사 대행업의 매출비중이 높아져서 매출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은 P의 철수에 따라 사후적으로 다른 업종이 추가된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경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30

11. 연구개발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끝.